

의안번호	2205500
의 퇴 인	박정의원
회 답 일	2024.12.23.
추 계 번호	24D503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7조의2 (접경지역지원기 금의 설치)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 발전 및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제1항)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제2항) 1. 정부의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5.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기금의 운용수익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함(제3항) 1. 농어업·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개선 2. 전기·통신·가스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 3.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의 개발 5.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 6. 교육·의료·후생 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7. 민방위 정보, 대피시설 등 주민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이 수행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 -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대상·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7조의2(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안 제27조의2 신설)

- 개정안¹⁾은 접경지역²⁾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전입금 등을 통해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접경지역 지원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2019년에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을 수립하여 시행 중임³⁾
 - ※ [참고자료 1] 접경지역 현황
 - ※ [참고자료 2]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 개요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재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사업의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
- 개정안은 기금을 산업기초시설의 확충·개선,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

1) 개정안은 박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498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50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4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현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3) [참고자료2]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 개요 참조

주거환경의 개선, 관광자원의 개발,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주민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사용하도록 규정함

- 다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업에 더하여 추가로 수행하거나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므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 사업의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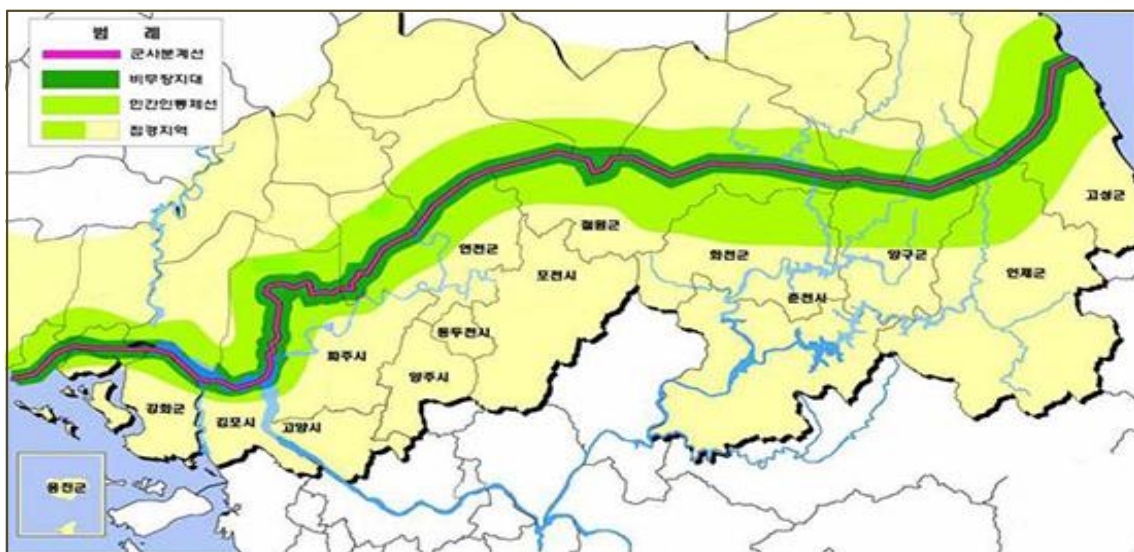
[참고자료 1] 접경지역 현황⁴⁾

□ 기본 현황

- (정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및 민간 인통제선과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시·군
- (시군 현황) 15개 시·군, 203개 읍·면·동 ('24.11 기준)

시·군		면적 현황	인구(명)
계		203개 읍·면·동 9,641km ²	3,143,388
인천광역시	강화군	13개, 411km ²	69,299
	옹진군	7개, 173km ²	20,020
경기도	동두천시	8개, 96km ²	86,889
	고양시	44개, 268km ²	1,070,671
	파주시	23개, 674km ²	510,140
	김포시	14개, 277km ²	486,905
	양주시	12개, 310km ²	288,273
	포천시	14개, 826km ²	141,572
	연천군	10개, 676km ²	40,804
강원도	춘천시	25개, 1,117km ²	286,110
	철원군	11개, 889km ²	40,540
	화천군	5개, 909km ²	22,975
	양구군	5개, 704km ²	20,631
	인제군	6개, 1,646km ²	31,532
	고성군	6개, 665km ²	27,027

□ 접경지역 범위



4)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 개요⁵⁾

□ 사업개요

- 사업목표: 국가 안보상 중첩된 규제로 발전이 정체된 접경지역에 대한 새로운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도모
- 사업기간 : 2011년 ~ 2030년(20년)
- 지원근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 사업내용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행안부 소관사업 추진
 - －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 평화빌리지 조성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보조율 70%)
- 추진경위
 - － '09.12.2. : “접경초광역권 발전 기본구상” 대통령 보고
 - － '11.7.27.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심의·확정
 - － '19.1.23.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심의·확정
- ※ 심의·조정 : 현행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심의

□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	2023	2024
계	51,610	49,849
◦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15,335	25,942
◦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	2,000	4,838
◦ 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조성	500	1,050
◦ 평화빌리지 조성	500	2,050
◦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사업	200	1,675
◦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원사업	—	1,400
◦ 춘천 소양8교 건설	—	1,000
◦ 양주 회암IC 연결나들목 지하차도 건설	—	1,000
◦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LPG) 구축	12,700	10,780
◦ DMZ통합시스템 유지관리	114	114
◦ 민통선 출입간소화 시스템설치	2,566	—
◦ 광덕터널 도로개설사업	700	—
◦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16,995	—

5) 행정안전부 제출자료